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www.cultwofnb.com



정 보 공 개 서

(주)컬투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00100628

최초 등록일 : 2010 년 12 월 23 일

최종 등록일 : 2024 년 12 월 31 일

[(주)컬투에프앤비]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 길 12, 8 층 805 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대표전화] 02-2070-5555

[대표팩스] 02-2057-9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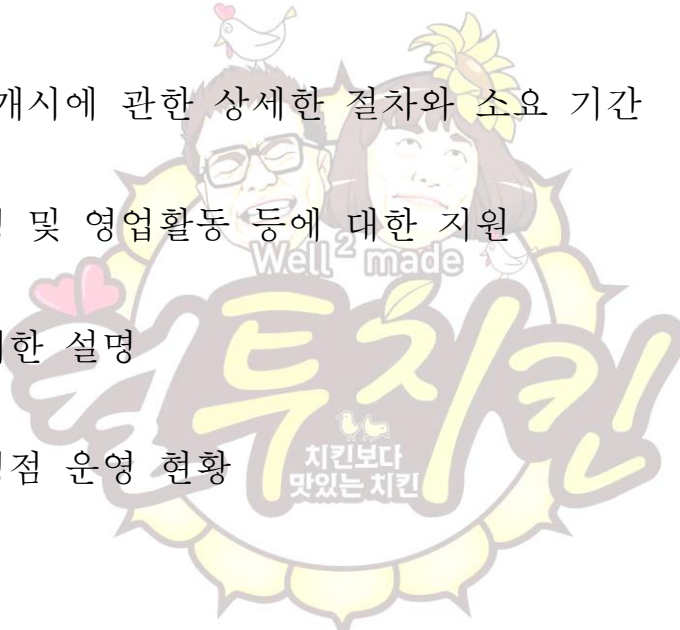
[가맹사업부] 02-2070-5555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V. 가맹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서류

- [별첨 1] 별지 제 2 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 [별첨 2] 별지 제 3 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별첨 3] 재무제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컬투 에프앤비	컬투치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 길 12, 8 층 805 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번호
	2010.04.21	2010.04.19	박영준	02-2070-5555	02-2057-9282
	법인등록번호	110111-4334374	사업자등록번호	107-87-3523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박영준	컬투치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 길 12, 8 층 805 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영준	02-2070-5555	02-2057-928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창수	컬투치킨 외 1 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 길 12, 8 층 801 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용	02-6415-8610	02-557-193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이창용/ 프랜차이즈 엠앤에이 거래소(주)	프랜차이즈 엠앤에이거래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 길 12, 8 층 801 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용	02-6415-8610	02-557-1933
	법인등록번호	110111-7839397	사업자등록번호	707-88-02223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컬투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컬투치킨	가족형 외식 브랜드로서 즐거움이 가득한 정직한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상호	컬투치킨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22161-0000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20153-0000
광고		컬투가 메인 모델로 광고 및 홍보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원 단위,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446,034	1,141,721	-695,687	684,284	-563,630	-594,073
2022 년	384,738	1,285,864	-901,125	649,804	-187,252	-205,438
2023 년	278,788	1,483,610	-1,204,822	536,967	-260,886	-303,696

그 근거자료는 별첨 3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영준	대표이사	2024.09~현재	(주)컬투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김창수	감사	2024.09~현재	(주)컬투에프앤비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1	3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사용인)	프랜차이즈 엠앤에이거래소(주) /이창용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개시 전	프랜차이즈엠앤에이거래소 (등록번호: 20240008)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컬투치킨		2010.05.20 출원 2011.11.30 등록	출원번호 41-2010-0013098 등록번호 41-0222161-0000	이창용	2031.11.30
		2010.06.18 출원 2011.10.31 등록	출원번호 41-2010-0015645 등록번호 41-0220153-0000	이창용	2031.10.3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컬투치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03월 04일
컬투치킨 직영점 개시일 : 2010년 12월 21일

2. [컬투치킨]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김성범	2010.04.19~ 2014.10.0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97-4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김성범	2014.10.06~ 2018.03.05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8길 49, (합정동, 유니타워 6층)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임종완	2018.03.06~ 2019.0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길 23-6(양재동)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유희성	2019.08.01~ 2023.1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길 23-6(양재동)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임대진	2023.12.01~ 2024.08.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길 23-6(양재동)
(주)컬투에프앤비	컬투치킨	박영준	2024.09.05~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78길 12, 8층 805호 (역삼동, 예미프레스티지)

3. 컬투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컬투치킨	대분류(있는 치킨)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컬투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80	80	0	72	72	0	70	70	0
서울	7	7	0	7	7	0	8	8	0
부산	0	0	0	1	1	0	1	1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2	2	0	2	2	0	1	1	0

광주	4	4	0	3	3	0	2	2	0
대전	4	4	0	3	3	0	4	4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6	16	0	16	16	0	14	14	0
강원	9	9	0	5	5	0	4	4	0
충북	4	4	0	4	4	0	4	4	0
충남	17	17	0	14	14	0	16	16	0
전북	4	4	0	6	6	0	4	4	0
전남	2	2	0	2	2	0	4	4	0
경북	3	3	0	2	2	0	1	1	0
경남	3	3	0	3	3	0	4	4	0
제주	4	4	0	3	3	0	2	2	0

5. 바로 전 3 년간 [컬투치킨]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9	18	3	14	0	80
2022	80	10	18	0	3	72
2023	72	11	13	0	7	70

6. 컬투치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컬투치킨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사용인)	프랜차이즈 엠앤에이거래소(주) / 이창용	프랜차이즈 엠앤에이거래소	20240008	서비스	0/1	0/1	0/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 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가맹점 매출액은 POS 상 매출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 영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 가맹점은 12개월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 ※ 위 매출 기재 내역은 가맹점이 배달영업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배달 영업 매출까지 파악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 가맹점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0 개	1,589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컬투치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충청지사	충청지역	컬투치킨 대전충청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49 번길 53(교촌동,1 층)

	(대전, 충청전역)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접수
		홍승주	042-543-0092		2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1.06.28~2024.12.31	○	○	○
구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특수지사	수도권지역 내 일부 매장 관리	컬투치킨경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 가길 15-3 (녹번동,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접수
		이경무	(비공개)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3.03.15~2024.12.31	○	○	○

※ 상기 표의 지사의 권한 중 “가맹계약 체결권한”은 당사에 사전 승인 후 가맹계약 진행을 의미합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사업년도에 광고·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2023.1.1~12.31	(비공개)	(비공개)	0	
판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합계	-	-	88,857	88,857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홍대역지점 (기업고객팀)	각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66-2566(내선 0->4)
농협은행	예금부	각 지점 및 인터넷뱅킹	1661-3000(내선 0->2)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신청서 교부
2. 가맹점 사업자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가맹금입금 (가맹금 예치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3. 기업은행에서 가맹금 예치증서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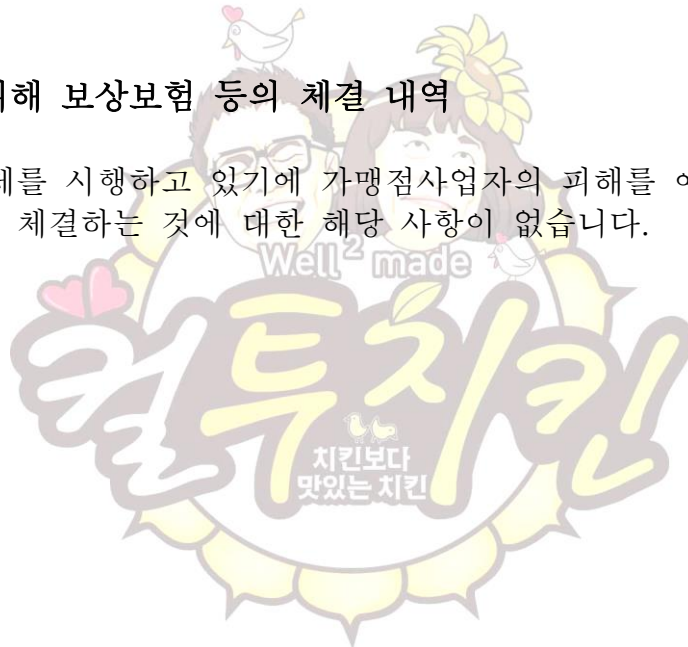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	-	-	-	-

※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컬투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 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연	내역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시	반환되지 않음 (단, 가맹계약서 제 4 조의 경우 일부 반환 될 수 있음)	브랜드사용권, 조리기술사용권, 가맹점운영권, 노하우 제공비, 신메뉴 개발에 대한 대가	- 가입비 및 점포 선정 지원 -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 오픈 당일 인력지원
교육비	1,320	계약체결일과 동시	교육 이수 전 계약 해지시	재료비, 인건비 등 사전교육에 소진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관측 홍보비	1,650	계약체결일과 동시	제작 및 구매전 취소가능	영업개시 행사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공제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1,000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로열티의 미지급, 영업표지의 미철거 등 가맹 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 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3)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9,470
가 명 비	5,500
교 육 비	1,320
관측 홍보비	1,650
계약 이행 보증금	1,000 (개설비용 미포함, 계약 해지 시 반환)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66m² (20 평)형 기준,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36,000 (일반사양은 28,600)	1,800	- 착수금 (공사 시작 전) 40%	공사 7 일전 계약취소	초기에 제작 및 투자, 소모되어 반환조건 시기를 지나서는 반환불가
간판 설비	협력업체	4,400	-	- 중도금 (공사중간일)	공사 5 일전 계약취소	
실내집기(의탁자)	협력업체	3,850	-	40%	공사 7 일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 집기	협력업체	17,600	880	- 잔금 (오픈 3 일전) 20%	미공급시	
초도 식자재	(주)컬투에프앤비/ 협력업체	1,100	-	초도물품 발주 시	미공급시	-
총계	-	62,950	3,148	-	-	고급사양 기준

※ 별도 공사

기타 선택 공사	철거, 전기증설, 가스인입증설, 상하수도, 정화조증설, 외부다트입상, 냉난방설비, 어닝, 돌출간판, TV 설치, 전화설비, 오토바이, 포스, 외부전면 조성 등
----------	--

- ㄱ)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ㄴ)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_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m² 기준으로 150 천원(부가세별도)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 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할 수도 있습니다.
- ㄷ) 주방기기(집기), 인테리어 관련 비용, 간판 및 초도 물품비 등은 초기에 투자되어 소모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 ㄹ) 점포시설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개점일 전까지 귀하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되 당사에게 조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 영업팀 및 전국지사)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담당자배정→상담을 통한 희망자의 원하는 지역파악→현장조사→최적입지도출

ㄱ) 점포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입니다.

ㄴ) 점포 인허가 사항은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ㄷ) 정화조와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설치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ㄹ) 점포 인허가시 참고사항

구분	확인내용	비고
점포인허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발급	관할 세무서 확인 관할 위생과 확인
전기사용	전기용량 확인	전기 사업자 개별의뢰 승압
가스설비	LPG/LNG 확인(주방기기관련)	LPG : 가스설비 허가자에 의한 개별설치 LNG : 관할 한국도시가스에 의뢰 개별설치
정화조	점포면적 * 0.8 인조	일반음식점 적용 시군구 조례규칙 적용
상하수도	수도 인입 확인	해당 설비업체에 개별의뢰
기타	에어컨, 전화 등	별도 구입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 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 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 일 것	원동기 면허 소지자 (배달 시) 용모 단정할 것 만 18 세 이상일 것

ㄱ) 부부 경영이 원칙으로 가맹점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는 필히 점주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ㄴ) 점주 기본교육은 [컬투치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매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점주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가맹점의 운영 및 제품의 조리를 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매장의 크기에 따라 주방, 설비 집기 비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잔금
납부일	-	계약일	계약일+ 7 일	오픈일
비고	-	총액의 30%	총액의 40%	총액의 30%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VAT 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무료	해당사항 없음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판촉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비용	협력업체	수시변동	변경 후 2 일 이내		매출증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고려하여 협의 결정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협력업체	전체 수수료의 50%	수수료 제외 후 정산금 익월 말일 입금	후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실시 5 일 이전	본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참 시 반환됨	실재료 및 원가 산출
지연이자	가맹본부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리모델링 비용	협력업체	3.3 m ² 기준가산정	공사실시 5 일전		2 년마다 추후공사 여부 결정에 의해 지급
	협력업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단위:천원)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 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직전 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판매 관리	고객관리프로그램 또는 판매장부 확인	1 회 / 1 개월 또는 1 분기	문의 : 관리팀 및 각 지사 (02-2070-5555)
재고 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1 회 / 1 개월 또는 1 분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방문)	문의 : 관리팀 및 각 지사 (02-2070-5555)
회계 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 년 1 회	문의 : 관리팀 및 각 지사 (02-2070-5555)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시 당시에 사용되는 계약서상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컬투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본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직계존속 이외의 양수자는 가맹본부에 교육비(1,320 천원-부가세포함)를 지급하고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경업금지 기간

[컬투치킨]의 원/부재료, 메뉴, 운영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 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가맹계약이 존속 중일 경우에는 동종업종의 경업이 금지 됩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은 V-7-1 에 나와 있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ㄱ)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컬투치킨”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등록 (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 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속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30 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ㄴ)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ㄷ)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7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ㄹ) 당사는 귀책 사유 없이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가 소송 등의 행위를 하여 승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 비용 및 당사가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요약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컬투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필수품목,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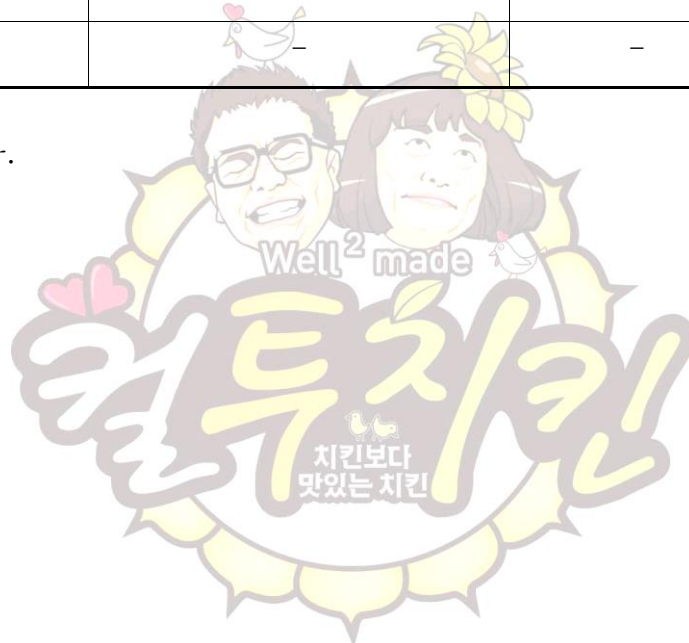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ㄱ)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승인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승인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ㄴ) 당사와 귀하와 개점 전 승인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needs의 변화, 시장 상황,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 - 3 - 3)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메뉴는 추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컬투치킨’과 동일한 업종 (치킨 업종)	컬투치킨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세대 수 9,000 세대 혹은 가맹점간 직선거리 800m 이내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
	-	-	-	-

홈쇼핑	-	-	-	-
전화권유판매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2021년 중도 해지 및 종료 가맹점에 대한 매출이 미포함 되었지만 직영점 매출이나 기타 오프라인 매출이 없어 가맹점의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100%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컬투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의 갱신 및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②, 아니오→ 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④, 아니오→ 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⑤, 아니오→ 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 A	① + 15 일
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C, 아니오→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 B, 아니오→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 ⑧	D-90~180
⑧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E, 아니오→ 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13 가지로 계약해지 사유(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1 회에 한해 당사가 조건부 처분 유예를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반복될 경우)와 유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을”이 계약서상 규정하는 금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16 조 3 항-1)
-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16 조 3 항-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서 16 조 3 항-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16 조 3 항-3)

- [컬투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 5 조 2 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 16 조 3 항-3)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1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절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본사가 정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 3 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상기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사전통보 여부	동의 방법
-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가맹계약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귀하에 그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통보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귀하와 당사간에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수정할 경우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 가맹점에게 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 본사 영업팀 (02-2070-5555)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소요)→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본사 영업팀 (02-2070-555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당사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상속인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5일 소요)	교육 수료 및 교육비지급
대리 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대리 운영	
업무 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컬투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영업이라 함은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계약자와 실제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실제운영자로 하여금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며, 실제운영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컬투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후 13:00~오후 24:00 (상권 및 환경에 따라 매장별 차이가 있음)	1 개월에 4 일 이상 휴무 제한	문의 : 컬투치킨 영업팀 (02-2070-5555) 귀하는 3 일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휴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클레임이 없도록 하고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 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관리 (10 항목)	담당자 매장방문→품질 확인→관리표 작성→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1 회/1 분기	매장 관리팀 각 지사	

서비스 관리 (10 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주문→친절도 확인→ 관리표작성→ 완료	1 회/1 분기	매장 관리팀 각 지사	
청결관리 (10 항목)	담당자 매장방문→청결 확인→관리표 작성→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1 회/1 분기	매장 관리팀 각 지사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방문(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컬투에프앤비와 귀하가 각 1부 씩 보관하게 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영업점을 점검하여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및 관리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및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품질공급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컬투치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 매출 비율에 따른 비율산정	광고계획공고→가맹점 광고참여 여부 결정→가맹점 부담액제시 (명세서)	대중 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본사 부담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별로 실비용 부담)			행사계획공고→가맹점부담액제시 →가맹점의 행사참여결정→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할지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정해진 영업구역 외에 미 개설지역에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에도 관할 지사와 협의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을”이 제 36 조(영업비밀유지), 제 37 조(경업 피지의무) 및 제 34 조(계약 해지, 종료 후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 36 조(영업비밀 유지), 제 37 조(경업 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삼천만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⑥ 제 34 조(계약 해지, 종료 후 조치)를 위반할 경우 1 일당 금삼십만(W300,000)원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VI.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20 평 기준 - VAT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 일 내외	14~15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계약 14 일 전)	D-45 (계약 14 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D-33~31	
가맹 계약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D-30	
가맹금 등 지급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 일)	
점포 실측 / 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3 일)	
실내 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1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23 (20 일)	
교육실시	- 점포 운영 교육 실시	D-15 (7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입지선정, 점포 개발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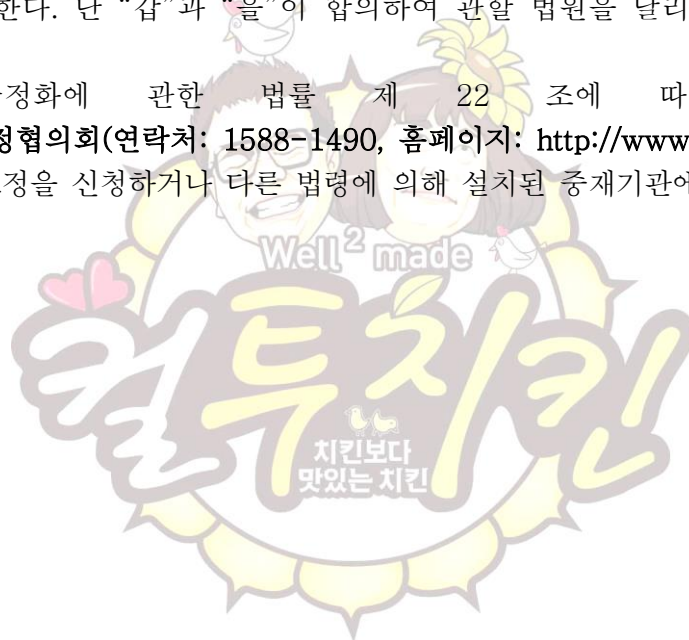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가맹점관리 담당임원 1, 외부 전문가 1, 가맹점사업자 1, (총 3인)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 관계 조사 (15 일 내외) →위원회 개최 및 결정	문의 : 본사 영업팀 (02-2070-5555)

- 1) 본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양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계약 당사자간의 전문에 의한 해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을 거친다.
-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나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컬투치킨]의 가맹점 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 대출	한강주류 (지역에 따라 상이)	0~5,000 만원 (점포입지에 따라 상이)	10~20 개월 분할상환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조건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컬투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점주 기본 교육	회사 소개 컬투치킨 사업전략 위생관리 원부재료의 종류 조리과정 조리실습 친절/서비스 교육 고객관리 프로그램 품질/청결/서비스 관리 영업관리 외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합숙 실습 교육 집단 강의 (당사가 지정한 교육장)	계약 후 입소 가오픈전 퇴소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가맹점 재교육	집단강의/실습교육 S/V 를 통한 개별교육	미정	소집 시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컬투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4 박 5 일 (총 36 시간)	최초 교육비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7 일		이수 후 직영점 파트타임 근무
보수 교육	1 일 약 1 시간	실비 부담	신 메뉴 출시 시 소집 시 필수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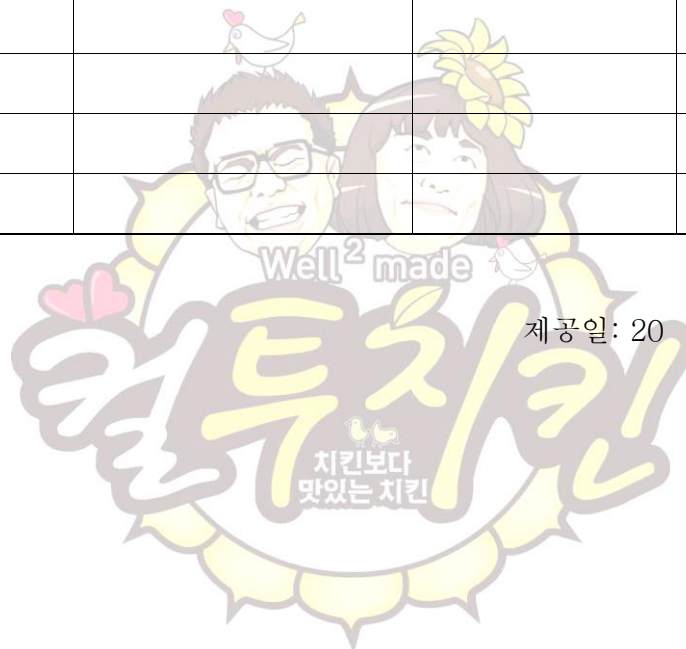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 장소			
수령 확인	이곳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제공자

가맹본부명:

제공자명: (인)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 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 확인	이곳에 “정보공개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제공자

가맹본부명:

제공자명: (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